제 8 장 | 주민생활 지원

제 1 절 금정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 3 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제 4 절 의료급여
제 5 절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

제1절 금정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 추진배경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3.7.30)으로 區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06년부터 매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매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여건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야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중심의 복지구현을 위한 비전제시

○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구민의 복지욕구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 우리구 특성에 맞는 목표 및 추진계획을 제시

○ 부문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별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방안 마련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수립시기 : 4년마다 수립,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

○ 1기(2007년~2010년) / 2기(2011년~2014년)

나. 2012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추진 실적

1) 저소득층 복지 및 자활분야

○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강화를 위해 상담 전문인력 배치로 구직자의 지역접근성을 확보하고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조사를 하여 구직자와 알선 등 맞춤채용 등 1,740개 일자리를 발굴하고 455건 취업을 연계하는 등 실적을 거두었으며, 일자리와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인 사회적기업 5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희망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음

○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9건 융자, 전세자금 43건 및 생업자금 6건을 추천하였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LH, 부산도시공사에 예비입주자 299세대 추천하였음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을 신속 발굴하여 203명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사랑의 열매 지원사업으로 146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 및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는 전문요원(4명)의 방문상담(1,666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후원자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수혜자에게는 이웃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행복금정 천사구좌 후원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후원자를 241명 발굴하여 수혜자 255명에게 1인당 3만원~15만원씩 지원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2) 노인복지 분야

○ 관내 독거노인 6,683명('12년1월기준) 실태조사에 따라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자 529명을 선정하고 노인돌보미를 통하여 안전망을 구축,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 어르신 144명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밑반찬, 이미용, 가사, 집수리, 집청소, 후원, 결연 등)를 지원하였음

○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은 1.4백만원을 확보하여 만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였고,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교육1회, 자원봉사활동 1회 하였음

○ 경로식당, 식사배달,밑반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은 당초 240백만원, 450명을 대상자로 계획하였으나, 624명에게 지원하는 실적을 수행하여 100% 실적 달성함

○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사업은 297백만원, 개보수 14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124개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개수가 24개를 운영하였음

○ 노인복지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연 2회 회의 개최를 계획하여, 실적을 100% 달성하였음

3) 장애인복지 분야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연금 등 지급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 지원 및 정보화 교육 지원 등을 성공적 추진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

4)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아동발달계좌 지원 및 홍보 : 월평균 406명, 예산집행 105백만원 집행
○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 연평균 2,625명, 예산집행 703백만원 집행
○ 필수연계기관(경찰서,교육청 등)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구성・운영 되었으며, 위기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사항 관련 협의 등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청소년의 범죄노출 등 2차 피해 예방 등의 적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음

5) 여성・보육복지 분야

○ 평가인증 미참여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 정책으로 2011년도 신규 평가인증 6개소, 재인증 통과 14개소 어린이집의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122개소 중 81개소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인증되었음

○ 무료급식소 주5일 운영, 여성 합창단 육성,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지원 강화하였음

6) 보건의료복지 연계분야

○ 금정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학교 및 유관기관의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사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실적에 있어서는 대부분 초과달성을 하는 등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졌다고 판단됨

○ 사례관리,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의 대부분의 사업이 금정구 및 인근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제공되어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입지를 넓힘

7) 사업기반조성 분야

○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등 심의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를 9회(서면7회, 회의2회) 개최하였으며, 서비스연계(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회의도 1회 개최하였음

다.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 7개부문 61개사업

부 문 별	구분	세부 사업명	예 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저소득층 복지 및 자활	일반 사업	취업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20	일자리 60개 창출
		저소득층 고용안정 지원	0	성과관리 참여자 취업연계
		융자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100	자금 지원, 홍보
		주거안정 지원	0	임대주택 연계 및 전세보증금 융자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실화	293	전년대비 20가구 증가 홍보 50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86	지원대상 가구 3% 확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683	사업장 발굴 및 대상자 선정 30개
		자활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70	30가구 주거환경개선
		사회적 기업 육성	300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저소득층 지원관련 전문 상담봉사원 운영	110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회적지지망 형성
		혼자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 실시	0	응급상황 긴급대처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0	건강보험료 월7,000원 600명 지원
	핵심 사업	행복금정 천사구좌 후원 사업 추진	0	후원자 발굴 900명 수혜자 지원 600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0	정기적 방문상담,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
노인 복지	일반 사업	독거노인 24시간 안전네트워크 체계 구축	0	간담회개최, DB 업데이터
		장기요양 서비스 통합제공 시설 확충	0	일원화된 노인복지 서비스 정보창구 홍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1	우수프로그램 지원
		긴급지원 및 무료급식 확대	240	무료급식 대상 10%확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	347	경로당 환경개선, 운영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201	서비스대상 확대 돌봄종합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192	이동프로그램 실시
	핵심 사업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0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성
		준고령자를 위한 노후생활 설계 프로그램	0	욕구조사 실시

부 문 별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장애인 복지	일반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간 네트워크 활성화	0	정기회의 개최 활성화프로그램 시행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2,620	부양수당,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 센터 운영	86	재활보조기구 수리 200건
		장애인 정보화교육 운영지원	중지	시 선정사업으로 시행 불투명
		장애인 생활지원 상담실	0	상담건수 150건 이상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98	신규프로그램 2개실행
		장애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0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0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10개소)
	핵심 사업	장애인 이용 문화·체육시설 확보	0	이용자 참여확대 통합프로그램 시행
아동·청소년 복지	일반 사업	아동·청소년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동	0	청소년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홍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욕구조사	폐지	유아가정으로 아동욕구조사는 시기상조
		지역아동센터 시간 연장	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발달 계좌 지원 및 홍보	106	매칭 대상자의 매칭율 90%이상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909	아동의 안정적 영양 공급 및 정서적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34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핵심 사업	복지장학기금 확충	11	장학금 수혜자 확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증가	8	아동 심리적안정 증진 지역대학협력체계구축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 대처를 위한 신고체계구축	2	학교폭력, 성폭력 신고체계 홍보활성화
여성·보육 복지	일반 사업	어린이집 영아보육도우미 배치 운영	30	보육도우미 활동비 지원
		보육료 지원 강화	12,361	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만4세 무상보육료 지원확대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340	협력기관 10개소
		보육시설 환경 개선	3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장애아동 보육지원 확대	731	특수교사, 치료사 파견, 언어·미술·심리치료 지원
		영유아 다문화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1	다문화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 실시 및 보급

부 문 별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여성·보육복지	일반사업	시설환경 우수 어린이집 선정	0	10개씩 선정 명패증정 시설우수 어린이집 공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72	사업 다양화와 활성화 욕구충족 및 센터 육성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지원 강화	765	운영 내실화, 입소자 대상 프로그램 실시
	핵심사업	여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0	여성단체와 연계로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보건의료복지연계	일반사업	관내 노인시설과의 연계 확대	0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확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연계건수 확대	0	연계건수 2,200건
		의료급여 만성질환자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0	의료급여일수 700일 이상자 중 300명 관리
		방문건강 관리 연계 프로그램 발굴	0	관련 프로그램 2개 발굴
		노인보건사업 활성화	47	치매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여성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21	여성건강검진 검사비 지원검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보건복지 네트워크 협력체계 활성화	0	의료서비스 제공의 표준 매뉴얼 실행
	핵심사업	아동 및 청소년 사업관련 정신보건센터 활성화	8	아동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사업기반조성	일반사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0	직무교육 실시로 역량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자 고용	중지	2013년 사업계획 없음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13	통합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핵심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사업개요

가. 의의 및 특성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탈피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나. 도입배경

○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의 수요자 중심(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체계 개선

▷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 선택구매

○ 서비스 이용료 일부 본인부담으로 수요자 권리의식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 차이 〉

구 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 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요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지 원 방 식	공급자에 대한 지원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서비스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형성 지원
사 업 방 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Top-down)	지방 기획/중앙 지원·평가 분권식·상향식(Bottom-up)

다. 사업 유형

○ 지역선택형(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 지역개발형 사업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감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 비교 〉

구 분	표준형 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사업 개발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역할	사업 선택	사업 개발
제공기관 지정	복지부	지자체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2. 2012년 사업현황 및 실적

가. 사업현황(총 16개 사업)

○ 지역선택형사업 1개 / 시개발형사업 12개 / 구개발형사업 3개

나. 총예산액(935,182천원) ▷ 국비 654,626천원 시비 253,578천원 구비 26,978천원

○ 지역선택형 220,616천원 / 시개발형 534,716천원 / 구개발형 179,850천원

다. 사업내용

○ 지역선택형 사업(국비 70%, 시비 30%)

- 사 업 명 :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 주요내용 : 취학전 아동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 수행기관 : 웅진씽크빅, 대교눈높이, 교원 등 7개 기관

○ 市 개발형 사업(국비 70%, 시비 30%)

①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주요내용 : 운동기술 촉진,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발달촉진, 인지발달 촉진 서비스
- 수행기관 : 부산특수치료교육연구원 등 8개 기관

② 장애인 노인돌봄 여행서비스

- 주요내용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서비스
- 수행기관 : 하나플랜 등 7개 기관

③ 1·3세대 통합교육 「세대공감 Old & New」

- 주요내용 : 자연체험, 공예체험, 서예, 한문교육, 인성교육

▷ 노인이 가르치고 아동이 학습·체험

- 수행기관 : 금정시니어클럽 등 7개 기관

④ 근로자들의 근로의욕향상과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EAP

- 주요내용 : 제조업체근로자의 여가, 체력증진, 문화체험 활동
- 수행기관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

⑤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 주요내용 : 부산 해양도시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
  해양도시 탐험, 해양역사 탐험
- 수행기관 : 하나플랜 등 8개 기관

⑥ Art Therapy를 활용한 지역아동 EQ증진 서비스

- 주요내용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및 미술치료활동에 따른
  학교적응력 향상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부산특수치료연구원 등 14개 기관

⑦ 성장기 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 주요내용 : 성장기 아동들에게 기악레슨 및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수행기관 : MSP 건강복지사회서비스센터 등 14개 기관

⑧ 장애아동·청소년 홈티칭 사업

- 주요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1:1 교과지도 및 일상생활지도 서비스
- 수행기관 : 에이플사회서비스센터 등 11개 기관

⑨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 주요내용 : 치매예방을 위한 뇌기능 증진 및 건강정서증진 서비스
- 수행기관 : 영산복지사회서비스센터 등 20개 기관

⑩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 주요내용 : 특수 휠체어 렌탈 등 재활기구 대여
- 수행기관 : (주)아이앤유케어 부산지점 등 2개 기관

⑪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 주요내용 :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 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기관

⑫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주요내용 : 적극적 부모역할 프로그램, 성장지원 프로그램
- 수행기관 : 21세기사회서비스센터 등 6개 기관

○ 區 개발형 사업(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주요내용 : 놀이·미술·언어·요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

②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주요내용 : 체조·댄스·무용 등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5개 기관

③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주요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개선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사랑안마원 등 2개 기관

라. 이용 및 지원실적

○ 서비스 이용 : 총 15,215건

▷ 지역선택형 9,761건 / 시개발형 4,022건 / 구개발형 1,432건

○ 지원실적 : 930,157천원 (국비 651,109천원 시비 252,070천원 구비 26,978천원)

▷ 지역선택형 215,591천원 / 시개발형 534,716천원 / 구개발형 179,850천원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나. 제정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라.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2) 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 자활지원

마. 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절차

(1) 신청

○ 신청권자 : 보호대상자, 친족 및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소득·재산관계서류 등

(2) 조사

○ 조사대상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가구원

○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 현장조사

(3) 보장결정

○ 보장의 단위 :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되 특히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결정·통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여부 결정 후 서면통지

○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현황(단위:세대)

계	적합	부적합	보호중지	비고
1,362	535	245	582	

(4) 변동·사후관리

○ (변동관리)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정비

○ (사후관리) : 부정·중복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바.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사업			23,334,499	
구분	생계급여	4,468가구	17,223,366	수급자
	주거급여	4,177가구	4,217,515	수급자
	교육급여	1,333명	960,917	수급자 중·고 입학금, 수업료
	해산.장제급여	217명	108,151	수급자
	정부양곡	1,707세대	509,693	수급자, 차상위
	월동대책비	473세대	23,650	수급자, 차상위
	교육장려금	985명	291,207	수급자, 차상위 자녀

사.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소 계		소 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 계	**4,935**	**7,685**	**4,750**	**7,291**	**185**	**394**
서 1 동	465	733	448	700	17	33
서 2 동	358	547	348	527	10	20
서 3 동	405	608	385	568	20	40
금 사 동	316	483	308	472	8	11
부곡1동	523	826	497	776	26	50
부곡2동	255	393	239	363	16	30
부곡3동	197	306	184	280	13	26
부곡4동	316	461	308	439	8	22
장전1동	185	286	178	278	7	8
장전2동	144	189	142	186	2	3
장전3동	247	363	241	345	6	18
선두구동	119	150	116	142	3	8
청룡노포동	167	245	162	230	5	15
남 산 동	747	1,270	723	1,205	24	65
구서1동	187	353	173	317	14	36
구서2동	267	427	261	418	6	9
금 성 동	37	45	37	45		

아.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재산의 소득 환산율

구분 \ 종류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 급 권 자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 의무자	재산종류 구분 없이 4.17%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2(월/만원)	55	94	121	149	177	204	232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7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예 산 현 황 〉

(단위 : 천원)

계	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비등)	자활지원			
		계	자활근로 사업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실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28,675,460	23,478,190	2,598,635	2,219,700	5,670	373,265

〈 지 원 내 용 〉

구 분	내 용
생계급여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현금·현물)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집수리 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물급여 지급
교육급여	❖ 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 년1회 119.2천원) 단, 2004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는 없고, 부교재비는 36.0천원 지급(연1회) ❖ 학용품비 : 연2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자녀 전원 (1인당 49.5천원, 학기당 24.75천원씩 2회)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500천원(쌍둥이 500천원 추가)
장제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구당 500천원
의료급여	❖ 전수급자 의료급여1종 ☞ 전액, 의료급여2종 ☞ 85% ~ 90% 지원

2. 자활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특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음..

가. 선정기준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도 판정 기준)로서,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 지급이 가능함.

나. 2012년 자활사업 내용

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별)	실시방법	인원(명)					예산 (천원)
			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등	
	공동체(3),사업단등(24)		454	343	28	20	63	3,121,286
	3개 공동체		8	2	0	0	6	150,000
자 활 공동체	청결나라	민간위탁 (금정구지역 자활 센터)	3	0	0	0	3	53,500
	한마음농원		2	1	0	0	1	38,500
	해피클린청소		3	1	0	0	2	58,000
	22개 사업단		326	256	28	0	42	2,971,286
시 장 진입형	소계(2개사업단)		42	26	2	0	14	441,257
	척척박사 청소	민간위탁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15	13	0	0	2	179,590
	자활도우미(전담인력)		1	0	0	0	1	11,667
	복지업무도우미	구직접시행	26	13	2	0	11	250,000
사 회 서비스 일자리 형	소계(14개사업단)		114	78	8	0	28	1,300,743
	닥터클린소독사업단	민간위탁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7	4	0	0	3	84,133
	행복돌보미간병		12	9	0	0	3	133,791
	장애통합교육보조원		6	5	0	0	1	64,831
	깔끄미이불빨래방		4	4	0	0	0	46,436
	자람터		15	10	0	0	5	157,966
	걸레랑 빗자루		15	12	0	0	3	163,218
	꽃드림화훼		7	4	0	0	3	85,967
	한울토탈 하우징		7	5	1	0	1	93,703
	한마음공방		4	2	1	0	1	48,312
	커피사업단		3	3	0	0	0	58,588
	정다운도우미		4	3	0	0	1	45,262
	인큐전담(전담인력)		1	0	0	0	1	26,536
	결식아동도시락배달	구직접시행	6	4	2	0	0	58,000
	수목가꾸기사업		20	12	3	0	5	205,000
	금정도서관도우미		3	1	1	0	1	29,000
근 로 유지형	소계(6개사업단)		170	152	18	0	0	1,229,286
	문안도우미	구직접시행	19	17	2	0	0	133,000
	동환경정비사업		26	21	5	0	0	189,000
	옥외광고물정비		10	8	2	0	0	71,000
	공동자립장사업		10	9	1	0	0	71,000
	복지시설도우미		98	90	8	0	0	716,286
	공공시설관리지원		7	7	0	0	0	49,000
광역 자활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연계 (광역자활)	70	45	0	15	10	0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동부고용 지원센터	50	40	0	5	5	0

다. 대상자 참여사업 종류(자활역량평가표에 의거 분류)

자활급여종류		기 준	근로능력 점 수
노동고용부 자활사업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자	70점 이상
희망리본 프로젝트		·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로 취·창업 욕구가 높은자	70점 이하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51~69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이 가능한 자	50점이하

3. 저소득 주민 보호

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음

(1)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 융자대상 : 보증금 6,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
- 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융자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3,500만원 이내)

○ 융자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일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해당주택 1년 이상 경과,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융자조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 이 율 : 연2%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황

○ 융자 제외자

- 부동산 또는 중형이상 자가용 소유자, 신용불량거래자 등
- 다른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2012년 융자추천실적 : 49건 842,400천원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자

○ 자금용도

- 영세상행위 자금,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자금, 전세자금,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하

○ 융자조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이자 : 연3%(거치기간 중 무이자)

○ 보증조건

- 신용대출(1,000만원이하) : 재산세 2만원 이상인 자 1명
- 담보대출(2,000만원이하)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함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구서동 지점

○ 2012년 융자실적 : 9건 105,000천원

(3) 생업 자금

○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층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 1억원 이하인 자

○ 융자용도 :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연 이 율 : 연 3%

○ 융자기간 : 5년거치(이자만) 5년 균등분할상환(원리금)

○ 대출금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하
- 보 증 대출 : 2,000만원 이하
- 담 보 대출 : 담보 범위내(5,000만원 한도 내)

○ 대출유형

- 무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1인
-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

○ 2012년 융자실적 : 6건 90,000천원

나. 영구임대·전세임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철거세입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지구별 예비입주자를 관리주체(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기 또는 추가 입주자 선정 요청 시 통보하고 있음

〈 예비입주자 추천현황(2012년) 〉

사업주체	사 업 명	추천세대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	265	
	전세·매입임대	455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	147	
	전세·매입임대	90	

다.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려운 세대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음

〈 장학금 지급 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급회수	중 학 생		고등학생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12년	30명	12,000	1회	15명	4,500	15명	7,500

라.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전문직 자원봉사자단체로 금정「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조직·구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상·하반기 두 차례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순회봉사단 구성 : 6개 분야 약 70명(전문가 30명, 자원봉사자 40명)

▷ 보건·의료분야, 이·미용, 장수사진촬영, 시력검진, 복지상담, 무료급식

○ 수혜대상 : 금정구 지역 내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 최초구성일시 : 2000. 6. 11.

○ 운영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운영회수	4회	2회	2회	1회	2회	2회	1회	2회	2회	**2회**
봉사인원	251명	109명	114명	75명	193명	156명	61명	149명	160명	**156명**
수혜인원	2,276명	1,311명	1,354명	637명	1,943명	1,062명	820명	1,462명	883명	**1,856명**

마. 이웃돕기 성금 모금

○ 모금기간 : 2012. 12. 1. ~ 2013. 1. 31.

○ 희망 2013 이웃돕기 모금실적

(단위 : 천원)

모금목표액	총모금액	성금총계	성 금		성품
			일반성금	지정성금	
242,673	**351,161**	262,856	137,244	125,612	88,305

※ 2012년 모금액 351,049천원

바. 긴급지원제도 실시

(1) 긴급지원제도

기본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2) 지원 대상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등)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지원요청 또는 신고자

○ 요청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요청처 : 구청 긴급지원담당(☎519-4781) / 보건복지콜센터(129)

(4) 지원기준

○ 재산 13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20% 또는 150%이하

▷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5)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1회),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경우 의료 지원

(6) 긴급지원 기간 및 내용

○ 단기지원원칙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3개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3개월	1회	1개월	1개월	1개월
지원금액	1인 386~ 6인 1,430	300만원 이내	1인 345~ 6인 756	1인 478~ 6인 1,772	· 초·중·고생 교육비 · 연료비 : 85(동절기10 ~ 3월) · 해산비 : 500 · 장제비 : 750 · 단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 500

○ 2012년 지원 실적 : 134건(생계21/의료103/교육2/연료5/장제3)

/ 172,367천원

제4절 의 료 급 여

1. 의료급여 제도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종 별	대 상
1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세대, ❖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재민 및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2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세대

〈 의료급여현황 〉

(2012. 12. 31기준)

동 별	합 계		1종		2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합 계	5,677	9,084	4,703	6,322	974	2,762
서1동	452	756	361	495	91	261
서2동	353	578	283	383	70	195
서3동	405	656	337	476	68	180
금사동	308	494	249	333	59	161
부곡1동	535	915	443	640	92	275
부곡2동	253	416	215	296	38	120
부곡3동	195	329	150	201	45	128
부곡4동	317	501	270	370	47	131
장전1동	177	307	129	185	48	122
장전2동	153	217	135	161	18	56
장전3동	157	379	120	265	37	114
남산동	737	1,357	553	810	184	547
구서1동	195	376	142	214	53	162
구서2동	269	475	194	281	75	194
금성동	40	51	35	44	5	7
선두구동	122	164	109	132	13	32
청룡노포동	168	272	137	195	31	77
복지시설및행려자	841	841	841	841	0	0

나.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 의료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조견표 〉

<table>
<tr><th colspan="4">의료급여종별 / 의료급여기관</th><th rowspan="2">1종
수급권자</th><th colspan="2">2종 수급권자</th></tr>
<tr><th>일 반</th><th>장애인</th></tr>
<tr><td rowspan="8">1차
의료
급여</td><td rowspan="8">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td><td rowspan="2">의원</td><td>원내직접조제</td><td>1,500원</td><td>1,500원</td><td>750원</td></tr>
<tr><td>그 외의 경우</td><td>1,000원</td><td>1,000원</td><td>250원</td></tr>
<tr><td rowspan="2">보건기관</td><td>처방조제</td><td rowspan="2">무료</td><td rowspan="2">무료</td><td rowspan="2">무료</td></tr>
<tr><td>처방조제</td></tr>
<tr><td rowspan="4">약국</td><td>직접조제</td><td>900원</td><td>900원</td><td rowspan="4">좌동</td></tr>
<tr><td>보건기관
처방조제</td><td>무료</td><td>무료</td></tr>
<tr><td>처방조제</td><td>500원</td><td>500원</td></tr>
<tr><td rowspan="5">2차
의료
급여</td><td colspan="2" rowspan="2">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td><td>그 외의 경우</td><td>1,500원</td><td rowspan="2">총진료비의
15%</td><td rowspan="2">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td></tr>
<tr><td>원내직접조제</td><td>2,000원</td></tr>
<tr><td colspan="2" rowspan="2">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td><td>그 외의 경우</td><td>2,000원</td><td rowspan="2">총 진료비의
15%</td><td rowspan="2">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td></tr>
<tr><td>원내직접조제</td><td>2,500원</td></tr>
<tr><td colspan="3">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td><td>무료</td><td>총 진료비의
10%</td><td>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td></tr>
</table>

※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제5절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시설입소 유도 및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거리나 임시거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노숙인 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금정희망의집	서부로 40(서동)	41/44	7명	526-1033	

나. 부랑인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사랑의 선교회	동부곡로5번길 134-9(부곡동)	19/11	4명	518-8425	개인운영

다. 시설입소시(노숙인 쉼터) 지원사항

○ 안정적인 숙소와 식사제공(1인당 2식, 토·공휴일은 중식포함)

○ 일자리 정보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

○ 쉼터에 머물면서 저축을 할 경우 은행금리에 연3% 높은 금리추가 지급

○ 쉼터에 계신분들의 독립적인 주거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주거지원

○ 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자활프로그램 참여

○ 질병치료, 약품 제공 등 의료혜택

라. 노숙인 및 부랑인 지원시설

○ 응급잠자리 제공

- 평일이용시간 : 연중계속 저녁 5시~다음날 아침 7시까지
- 지원내용 : 잠자리, 긴급급식, 생필품(내의, 수건, 칫솔 등), 샤워·세탁 등
- 문 의 : 부산노숙인지원센터 ☎ 463-1127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 무료진료소 운영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야간 18:00～21:00(화, 금요일)
- 진료내용 : 일반내과 등
- 문　　의 : 사랑그루터기 ☎ 441-5662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임시잠자리, 긴급 급식, 생필품(칫솔, 면도기 등),
  샤워・세탁・이발, 쉼터연계 및 고충상담 등
- 문의 :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동구 고관로 46(초량동)] ☎463-7707
  부산노숙인지원센터[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463-1127